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. 6. 12 선고 2024가단512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6. 1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3. 10. 4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,630,7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,630,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김현준

별지